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5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17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원형, 이종환, 홍국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만료 후 구성될 차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제11대 의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임
- 현행 조례에는 위원 임기와 의원 임기가 불일치되는 사항과 관련한 지침 조항이 없어 외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혼란이 예상됨
- 이에, 의원 임기 만료 시 위원 임기도 자동 만료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촉 당시 의원 임기 만료 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자동 만료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3조제2항
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의 임기)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 시의 <u>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u> <u>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u> <u>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u> <u>본다.</u></p>

서울특별시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부 위원인 의원의 신분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으로서 임기도 자동 종료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